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22 선고 2020가단2787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최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1.

판 결 선 고 2021. 6. 22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6. 12. 28.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9,926,9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,926,9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유진현

별지